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http://www.humanrights.go.kr>

- 일시 : 2003.6.5(목)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국가인권위원회



EM006683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SCHEDULE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인사말

14:10 ~ 15:10 발 제

노 옥 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허 만 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협력적 적대관계에서의 북한인권: 개입과 교육

정 옥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하여

15:10 ~ 17:00 질의응답

목 차

발제 1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1
노 옥 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발제 2

협력적 적대관계에서의 북한인권: 개입과 교육	13
허 만 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발제 3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하여	63
정 옥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1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노 옥 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1. 북한인권 문제의 원인

식량난 이전의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상황은 정치시민적, 경제 사회적 문화적 제 권리를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거나 못하고 있어 이제껏 꾸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출신성분에 따른 봉건적인 신분차별과 연좌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부재, 형식적인 사법절차와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이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발전의 쇠퇴와 90년대 중반이후 연속적인 자연재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지원체계의 붕괴는 인권상황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변화시켰다. 에너지란과 식량난을 동반한 북한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마비는 배급제를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근본적으로 동요시켰다.

우리 단체의 조사로는 약 300만의 북한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으며 (북한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결과 [북한식량난 실태보고서] 발표 (1998.12),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재중 북한난민의 수도 30만에 이르렀다(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및 인권보고서: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 조사결과/ 1998년 11월 16일 - 1999년 4월 3일:약 5개월).

대량 아사자의 발생과 교통·통신의 두절, 병원 의료체계의 붕괴와 학교 교육의 마비, 파라티푸스 등의 전염병의 창궐과 생활용수의 부족, 먹을 것을 찾기 위한 가족의 해체와 중국으로의 도강,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 송환에 따른 처벌 등 북한 주민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직면하는 인권상황은 생명 보존 그 자체의 문제였다.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인권의 성격변화

식량난을 전후로 하여 북한인권의 상황은 그 이전과는 그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전체 주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한 현실에서 식량난 이전의 인권의 문제가 북한의 공권력 체제와 일부 주민간의 문제였다면, 식량난 이후의 인권문제는 소수 권력층을 제외한 전체 주민들의 생명 존립 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과도한 강제노동과 최소의 식량배급 등 죽음보다 못한 삶을 영위하거나 죽어갔다면, 이제는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해 소를 잡아 먹거나 전깃줄을 팔아먹다가 공개처형을 당하는 상황이고 그런 생계형 범죄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한다. 이제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닌 전 지역에서 누구나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상황이 되었다.

무너진 사회통제 시스템 하에서 주민들을 통제하다보니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대부분 비법활동으로 간주되어 모두 단속대상이 되어 극단적인 일벌백계형의 처벌이 일상화되고 있다.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약육강식의 세계로 전환되어 어느 것이라도 식량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팔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통상 인권침해 사례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 출신성분에 따른 연좌제 등은 더욱 극단화되었다.

식량난 이후로는 강제노동교화소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는 생계형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가 일반 북한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겪어야 할 고통이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정치범이 겪어야 할 고통과 큰 질적 차이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오히려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반 주

민의 인권상황이 더 열악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식량난으로 인한 인권문제의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인권침해가 사회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다른 아닌 생존권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생존권이 인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북한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권은 21세기 인류문명이 상상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그저 생존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정도이다. 서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인권의 원인

이러한 북한인권의 상황은 최강대국인 미국 및 남북의 대치, 자본주의 세력의 침투 등의 외적 요인과 함께 북한체제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문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한다. 김정일 정권의 독재나 사회통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의 주민들이 죽어갔다는 자체가 북한 김정일 정권이 비인도적, 비인권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의 비인권적인 상황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욱 더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직면한 자연재해와 사회주의 지원체제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 농업경제의 몰락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식량난의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 또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것이 생존권이고, 북한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 자력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도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해왔다. 300만의 아사자가 식량난으로 죽어가면서 우리 단체는 이러한 북한 주민이 겪는 비인권적 상황에 한국정부와 우리 민간단체 또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 사회가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회를 비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그 필요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인권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문제를 지금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과악 및 분석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존과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원인 분석에만 몰두하고 인권 개선없이 인도적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대다수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비인권적 태도이다.

2. 북한인권의 쟁점

‘식량권’의 우선적 제기

인권은 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인 발달 정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한 사회 안에서 제 영역 사이의 인권편차가 존재한다.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포괄적 관점에서 인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인권을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이 발달한 서구의 기준으로만 한 사회의 인권지수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며 조심스러워야 하며 동시에 한 나라의 특수성만을 내세워 인권의 보편성을 외면해서도 안된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인권상황으로서 생존권의 보장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식량난이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총체적인 인권의 위기상황에서 정치시민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다수가 생존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에 ‘식량권’이 시급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한마디 말로 정리하기는 북한주민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여성이 인신매매에 내몰리고 생존형 범죄가 창궐하는 그 바탕에는 먹고 살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며

중국으로의 비법 국경이탈도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인권 개선운동에는 몇몇 정치적 이슈와 밀접한 인권현안들만 부각되고 있다. 생존권은 여러 다른 인권 현안 - 이를 테면 정치범 수용소, 일본인 납치문제, 신분차별, 연좌제 등- 과 비슷하거나 축소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생존권은 다른 여타 다른 인권현안과 따로 분리하여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 - 그것도 배고픔의 정도가 아사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인권현안은 배부른 사치에 불과하다. 생존권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 사회에서 여타 다른 인권현안이 지켜지거나 개선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식량권의 보장과 이의 개선은 다른 인권현안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우선적이며 다른 현안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인도주의적 원칙의 접근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되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는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이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 국가가 인권 침해사태가 있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제 영역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있어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많이 거론하며 이번 59차 유엔인권결의안에도 그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정을 안다면 분배의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일면 타당하면서도 현실에 딱 맞는 것은 아니다. 남한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이제껏 거의 7년 동안 식량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군대로 들어간다, 장마당으로 쌀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를 제 3국을 통해 넘어온 북한동포들로부터 듣게 된다. 우리가 남포를 통해 식량지원을 한다해도 그것이 북한 전역에 골고루 분배될려면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간벽지까지 식량을 운반하기 위한 기름과 차량과 전력까지도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

의 너무나 척박한 사회간접자본과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 지원을 한다해도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중앙과 식량이 도착한 주변으로밖에 식량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김정일정권을 지지하는 핵심계층이나 군대로 들어간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식량이 부족하고 체제가 불안정한 어느 나라일지라도, 하물며 5,60년대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나라의 기간세력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점은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기까지 한 선택이다. 그리고 인민의 군대라고 하는 북한의 군대마저도 아주 소수의 특수계층을 제외하고는 이미 80년대부터 식량지원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주민들이 기르는 가축이나 식량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인터뷰한 북한동포들의 이야기로는 군대의 경우에도 굶주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군대가기를 회피한다고 한다. 더욱이 북한의 군복무 기간이 10년이기에 군인들에게 분배가 되니 지원하지 말자는 것은 무고한 북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주장과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지원한 쌀이 장마당에서 팔린다는 것도 쌀을 그냥 먹는 것보다 그 쌀을 팔아 좀더 짠 강냉이도 양을 늘려 먹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민들에게 쌀이 분배되어도 장마당에서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일 듯한 주장이라도 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대 국가의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할 때 평균 식량부족분 100만톤 이상의 대량의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원되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핵심계층에게 분배하기에 전국 산간벽지까지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장하며 모니터링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에 대한 정치적 입장으로 변모된다. 물론 국제사회가 식량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당국에 모니터링과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과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상호 연구는 필요한 과정이다. 국제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가 북한의 식량지원 모니터링의 문제가 이전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인권개선을 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그 나라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정신에서 기초한다. 북한의 경우처럼 생존권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 나라에 대한 인권개선 현안에 있어 인도주의적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을 위한 개발지원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본다.

모니터링이나 다른 인권현안의 개선을 내세워 식량지원을 조건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인도주의적 원칙에도 어긋나며 북한주민을 불모로 하여 인권을 압박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밍다고 식량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북한 주민이다.

북한체제와 북한정권 문제의 해결주체

북한인권을 거론하고 변화를 말하는 입장 중에는 북한인권의 원인을 북한정부나 체제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북한인권의 일차적 책임자인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과 인도주의적인 문제해결을 요망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다. 북한정부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와 북한정권에 대한 문제는 북한 주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김정일정권이 비인권적이고 폭압적일지라도 북한주민이 지지한다면 이것을 두고 외부에서 김정일정권에게 인권탄압의 책임을 물어 물리적 정권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월권행위이다. 미국이나 유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권리는 없다. 김정일정권에 대한 주민의 지지도가 없으므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그 해결방법이 북한내부의 주민이 아닌 제 3자의 경우에는 북한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상이 되기가 어렵다.

북한주민들이 어떤 정부와 체제를 선택할 지의 선택권은 북한내부의 문제이다. 인권개선을 요망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외부에서 정권의 성격이나 체제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북한인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어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이 더 인권적 태도라고 본다. 인권문제의 해결은 그것을 정치적 의도나 압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인 방식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문제의 당사자의 해결노력을 도우며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방안

북한 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북한주민의 인권의 주요한 요인이 식량난으로 인한 고통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식량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정권과 북한 주민은 구분되어야 한다. 식량지원에 있어서 ‘북한 정권이 밋다고 식량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북한 주민이다.

인권단체의 역할은 북한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요구를 대변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 과거에는 긴급한 식량을 요구하였고 지금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개선노력 요망

북한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식량난의 실태와 분배 등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여타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북한정부의 개선노력을 요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안정과 북한 민중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정부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과 북한정권 붕괴는 북한내부의 문제이고, 이는 북한 주민의 해결과제이다.

한국의 시민, 인권단체의 역할

한국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시민사회 내에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서로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확대하며 북한주민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시점의 북한인권의 핵심이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감소, 북한 주민의 생존권의 위협이기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없는 인도적인 식량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인권현안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반형성에 나서야 한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한국정부는 북한민중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량의 식량지원과 의약품 지원, 에너지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한다. 이는 민간단체가 할 수 없는 구호사업이며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 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발제2 협력적 적대관계에서의 북한인권: 개입과 교육

許 萬 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경북대학교 교수)

협력적 적대관계에서의 북한인권: 개입과 교육*

許 萬 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경북대학교 교수)

I. 서론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문제는 인류의 정치사회적 발전의 보편적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북한의 정치사회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의 '통일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단순히 彼岸의 일로만 치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재 북한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권유린의 일상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성을 꺾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통일된 후에 큰 갈등을 겪지 않고 사회통합을 이루고, 통합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조속히 일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고발들이 있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 선전으로 치부되어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탈북·귀순자들이 늘면서 그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어 국제사회에서도 학계 및 여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 내에서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

* 본 연구는 2003년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능성이 있으면서도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편승하여 오히려 관심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와서는 관련 수기 출판도 현저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제법학자들이 주로 법리적 조명을 통해 일탈현상을 지적하는 작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정치사회학적 분석이 절실히 요청된다.

아울러 정책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협상론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부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정부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사안에 대해 보다 더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외국, 특히 상대적으로 북한 당국자들에게 적대감을 덜 사고 있는 유럽의 인권단체들이 본 사안에 대해 균형 있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어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와 자료제공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성격상 다음과 같이 4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남북한 관계의 산물로서, 6·25전쟁 당시 84,532명(1953년 제2차 조사통계)의 민간인이 납북되었고, 종전 후에 5만 여 명의 한국군 포로들이 억류되었는데, 그 중 상당한 수가 현재 북한에 생존하여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베트남 전쟁에서도 상당한 수(RAND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수만 20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콩 민병대나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이송·억류되어 있다. 그리고 6·25전쟁이 종전된 후에 3,790명의 민간인 및 군인들이 납북되어 3,304명만이 송환되고 나머지 486명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최근에 와서는 공개된 정보도 부족하고, 한국사회 내에서는 별 관심도 끌지 못하는 정치범 집단수용소 문제가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바로는 5곳의 정치범 수용소와 1곳의 정치범 교화소에 최소한 15만 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인권유린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셋째, 1990년대 후반에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10만에서 30만 명 이상까지 추정되고 있는 재외 탈북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심각한 상황이다.

넷째,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일상사에서도 인권유린이 非一非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북한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 힘들게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이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정보부족과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한국 내에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논의는 부분성과 편협성을 가지고 있다. 즉, 최근에는 탈북자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있고, 가족들의 노력으로 전후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간간이 거론되지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져 있다.

II. 북한 인권문제의 4국면

1.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의 억류

가) 한국군 포로

6·25전쟁 종전 후에 5만 명 이상의 한국군 포로들이 귀환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북한에 29개소, 중국 내에 18개소의 상설포로수용소가 있었다. 그러나 1951년 12월 18일에 공산측이 제시한 포로 목록에는 이들 중 11개소의 북한 내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포로들만 제시되어 있었고, 나머지 18개소와 중국 소재 포로수용소 피 수용인들은 누락되어 있었다.

본 발제자가 그간 추적해본 바로는, 공산측은 전쟁 중에 7만~8만 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획득하였으나, 그들을 철로 및 비행장 보수작업에 동원하여 2만 명 이상을 희생시켰고, 적지 않은 수를 북한, 중국, 체코, 소련 등지에서 생체실험으로 희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국립묘지 위폐보안관에서 그간 실종 및 미확인 전사 처리자들로 게시되어 있던 사람들을 1997년 7~8월에 자체 實査를 한 결과, 102,384명이 그 대상자들인 것으로 최종 확인 되었다(육군 : 장군 1명, 장교 2,924명, 사병 92,213명 ; 해군 : 장교 49명, 사병 1,173명 ; 공군 : 장교 4명, 사병 68명 ; 종군자 및 군무원 : 3,672 ; 경찰 : 간부 352명, 비간부 1,578명 ; 경찰애청원 : 267명 ; 제1학도 의용군 : 83명).

정전협상 의제 중의 하나로 포로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던 1951년 12월에 유엔군측에서 파악한 한국군 실종자 수는 8만8천명 정도였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8일에 포로명단 교환시 공산군측은 한국군포로로 7,412명의 명단만을 제시하였다.¹⁾ 이는 실종자들의 9%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산군측이 개전초에 포획했다고 발표한 한국군포로 5만 여명의 14%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숫치다.²⁾

그런데 한국전쟁에 대해 비교적 近年에 간행된 중국 公刊史인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에 따르면 1950년 10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사이에 중공군에 의해서만 37,815명의 한국군이 생포되었다.³⁾ 이 문헌에서 중국측은 “살상”, “포로”, “투항”으로 戰果를 구분하고 있고, 이 37,815명은 포로와 투항인원을 합한 숫치이므로 이 한국군포로들은 종전시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북한군에 의해 포로가 된 한국군과 전쟁초기 4개월간 특히, 개전부터 낙동강방어전선으로 후퇴하는 동안에 많은 한국군포로들이 발생했을 것을 감안한다면, 공산측에 생포된 한국군포로는 한국국방부가 1996년에 공식 집계 했던 숫치, 1만9천여 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며, 종전시 적어도 5~6만 명 이상은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⁴⁾

-
- 1) 1951년 12월 18일 현재의 포로 현황으로 유엔군측은 공산군 132,474명(북한군 111,754명, 중공군 20,720명)을, 공산군측은 유엔군 11,559명(한국군 7,412명, 미군 3,198명, 영국군 919명, 터키군 234명, 기타 66명)을 체포한 것으로 각각 발표하였다.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p.23.
 - 2) 공산군측은 비교적 개전 초기인 1951년 3월에 총 6만5천명의 유엔군측 포로를 획득했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유엔군 대 한국군의 구성비로 봐서 이들 중 한국군포로가 5만여 명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3)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軍事科學出版社, 198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세경사, 1991.
 - 4) 한국군 포로의 귀환 : 8,341명 (부상포로 교환 471명, 정규교환 7,862명, 송환위조정 8명)
(Little Switch, 53년 4월) (Big Switch)
북한군 포로의 귀환 : 76,011명 (LS 5,640, BS 70,183, 송환위조정 188명)

	실종자	귀환자	미귀환자(※)	송환거부자
국군포로	: 88,000명	- 8,333명(+8)	= 79,667명(-8)	327명
북한군포로	: 111,754명	- 75,823명(+188)	= 35,931명(-188)	
미군포로	: 11,500명	- 3,746명(+2)	= 7,754명(-2)	21명
중공군포로	: 20,720명	- 6,670명(+440)	= 14,050명(-440)	

() : 중립국송환위원회 조정 후 귀환

(※) 이는 1951년 12월에 파악된 실종자를 기초로 한 계산이므로 실제적 미귀환자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중공군의 포로 획득 추이

	운동전 시기					진지전 시기					계
	제1차 전역 (1950. 10. 25~11. 5)	제2차 전역 (1950. 11. 25~12. 24)	제3차 전역 (1950. 12. 31~1951. 1. 8)	제4차 전역 (1951. 1. 25~4. 21)	제5차 전역 (1951. 4. 22~6. 10)	1951년 하계 방어작전 기간 (1951. 6. 11~11.30)	1952년 춘계 진지공고 기간 (1951.12.1~1952.3.31)	전술 반격과 상감령 방어작전 기간 (1952. 9.1.~11.30)	1953년 봄 대 상륙작전 준비기간 (1952.12.1~1953.4.30)	1953년 하계 반격작전 기간 (1953. 5.1~7.27)	
한국군	4,741	5,568	5,967	7,769	5,233	652	834	919	555	5,577	37,815
유엔군	527	3,523	367	1,216	2,073	334	124	160	134	250	8,708
계	5,268	9,091	6,334	8,985	7,306	986	958	1,079	689	5,827	46,523

출처 :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부록2, 3을 발췌·재구성함.⁵⁾

조사시점에서의 누락 가능성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인용된 통계숫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推論이 가능하다. 즉, 한국군 최종 실종자 102,384명에서 1951년말까지의 실종자 8만8천명을 뺀 숫치인 14,384명은 전선이 고정된 뒤에 실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중공군에 의해 포획된 한국군포로는 7,885명이다. 북한군에 의해 획득된 포로도 있을 것이므로 한국군 실종자들 중에서 포로 발생비율은 60%가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현 가용 숫치만으로도 54.8%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 전선이 수시로 변하는 運動戰 시기에 포로가 많이 발생하고, 북한이 부족한 전시인력을 국군포로로 충당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51년말에 파악된 실종자 8만8천명 중에는 포로 발생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⁶⁾

당시 공산군측 사령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공산군이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측 포로를 1950년 6월 25일~12월 25일간에 38,500명, 1950년 12월 26일~1951년 3월 25일간에 26,865명을 각각 포획했다.⁷⁾ 공산측의 이와 같은 발표내용을 전적으로 믿

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전게서, pp. 361~394.

6) 1951년 현재 유엔측에서는 미군 6천2백여명, 한국군 7천여명, 기타 유엔군 130여명, 합계 1만3천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했다. New York Times, 1951년 11월 17일,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전게서, p. 293에서 재인용. 그러나 종전 후, M. 클라크 장군은 귀환한 미군포로들을 심문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그의 미발표 유엔 연설문에서 1만32명의 미국포로와 12,622명의 기타 유엔군포로를 합쳐 전체 29,815명의 유엔측 병사들이 공산측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7,161명의 한국군이 공산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학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 수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한국군포로들을 가급적이면 전시인력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공산군측의 포로정책의 결과로도 보여 진다.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1954),

7) 유병화, “북한 억류자 송환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

기는 어렵지만, 이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전 후 9개월간에 포획된 유엔측 포로 65,365명에, 51년말까지 중공군에 의해 포획된 유엔측 포로 1만1~2천명과 북한군에 의해 포획되었을 유엔측 포로들을 합치면 최소한 8만 명 이상이 공산측에 의해 포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99,500여명의 당시 유엔측 실종자들 중에서 8만 명 이상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포로 발생비율에 대해 前述한 추측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높은 실종자 대 포로발생비율로 볼 때, 10만 명 이상의 한국군 실종자들 중에 8만 명 이상은 공산측에 의해 포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숫자로推算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포로 수만으로도 79,030여 명(88,000명의 80%, 14,384명의 60%)이다. 그리고 중국측 자료만 보더라도 그들 중 최소한 5~6만 명 이상은 종전시에 생존해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8년 6개월(1964. 9. ~ 1973. 3.) 동안 325,517명의 한국군 장교와 사병들이 577,487회의 각종 작전에 참가했다. 때때로 그들은 월맹 정규군에 맞서 안케패스(An Keh Pass) 전투나 짜빈동(Tra Binh Dong) 전투와 같은 큰 전투에도 참가했다. 한국군은 베트남 남부 밀림과 농촌지역 대부분을 장악한 베트남의 게릴라전에 맞서 많은 작전에 참가했으며, 작전 중 낙오된 병사들이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다고 한다.⁸⁾ 그런데 한국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5,066명의 한국군인이 베트남전쟁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⁹⁾ 그러나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으며, 2000년 7월 27일에 한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6명의 실종자(안학수 하사, 박성열 병장, 김인식 대위, 정준택 하사, 이용선 병장, 안상이 상병)만이 있고, 그중 안학수 하사와 박성열 병장은 북한에 체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 민병대의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감옥에 2년 가까이 감금되어 있다가 석방·귀환한 박정환 소위의 사례와 안케패스(An Keh Pass)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철수한 지 5일 후에 석방, 귀환한 유종철 일병의 경우를 통해서, 5,066명의 공식적인 사망자, 특히 4,650명의 전사 처리자들 중에서 많

선운동본부, 1995, p.353.

8) 박정환, 『느시』 I, II, 문예당, 2000.

9)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국방부, 2001, p.18. 그러나 국방부의 전사편찬위원회는 4,960명으로 사망자를 계산하고 있다(전사자 3,806명, 그 외 사망자 1,154명).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전사』, 10호, 국방부, 1985.

은 군인들이 베트남 민병대나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이송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 미군포로였던 F. 안톤(Frank Anton) 씨는 송환된 후에 『왜 나를 구출해 주지 않았소?(Why didn't you get me out?)』이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만났던 한국군포로가 “우리들(we)”라고 자신들을 지칭했던 것으로 봐서 최소한 2명 이상의 한국군포로가 존재했음을 확신하고 있다.

미국 CIA나 국무부 기록과 같은 미국 공식기록 역시 베트남전쟁 초기 한국군포로의 존재를 확신케 한다.¹⁰⁾ 즉, 1968년에 꽝 트리(Quang Tri)에서 5명, 1968년에 꽝 남(Quang Nam)에서 1명, 1967년에 꽝 응아이(Quang Ngai)에서 1명, 1970년에 빈 딘(Binh Dinh)에서 1명, 1966년과 1969년에 후옌(Phuyen)에서 3명, 1968년에 람동(Lam Dong)에서 1명, 1967년에 닌 투안(Ninh Thuan)에서 1명, 1968년에 키엔퐁(Kien Phong)에서 1명 등이 미국 정부문서들에서 발견된다. 즉, 적어도 18명의 한국군 전쟁포로가 있었으며, 1968년 4월에 제출된 미국의 한 연구보고서(All POW-MIA ARPA Report)에 따르면 20명의 한국군포로가 있었다는 것이다.¹¹⁾

미국 국방부의 1996년도 연구보고서 “국방부 포로/실종자 사무소 문서(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Office Reference Document)”에 수록된 한국군 포로 및 실종자들 중에서 조준분(CHO JOON BUN), 김홍삼(KIM HEUNG SAM), 김수근(KIM SOO KEUN), 김성모(KIM SUNG MO), 이창훈(LEE CHANG HOON), 이길영(LEE KIL YUNG), 이윤동(LEE YOON DONG), 민경윤(MIN KYUNG YOON), 박양정(PAK YANG CHUNG), 신창화(SHIN CHANG WHA) 등은 1994년 4월 22일과 2000년 7월 27일에 각각 한국정부가 발표한 “베트남전쟁 한국군 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이다.¹²⁾ 한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들은 베트남 민병대의 포로가 되어 “호치민 루트”를 통해서 월맹에 보내진 뒤에 월맹에 파병되어 있던 북한군에 인도되어 북한에 억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 <http://lcweb2.loc.gov/cgi-bin/query>

11) All POW-MIA ARPA Report, “Memorandum RM5729-1 ARPA January 1969” by Anita Lauve Nutt.

12) US Department of Defense, 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Office Reference Document, U.S. Personal Missing, Southeast Asia (and Selected Foreign Nationals) (U), Alpha, Chronological and Refno Reports, Unclassified, May 1996, DPMO/RD.

나) 납북인사

6·25전쟁 당시 북한은 84,532 명의 남한 민간인들을 납북하였다. 이들의 존재는 북한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남한 당국으로부터도 외면 당해 왔다. 近者에 이 납북자들의 가족이 단체를 결성하여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피랍자들이 납북된 후에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해 왔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한국군 포로들의 북한생활에 준하여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에 대성호 어부 10명을 납치하여 억류한 것을 필두로 하여 현재까지 총 406명의 어부를 납치하여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1969년 12월에 대한항공 여객기 승무원 및 승객 중에서 12명과 1970년 6월에 납치한 I-2정 승무원 20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 외에 북한은 1970년 4월에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납치한 교사 고상문과 1983년 7월에 납치한 재미 유학생 이재환, 1995년 7월에 중국 延吉에서 납치한 순복음교회 목사 안승운 등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³⁾

또한 1997년 10월에 검거된 북한의 공작원 최정남으로부터 확인된 바로는, 1978년 8월에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실종된 당시 고교생 김영남과 홍도 해수욕장에서 실종된 고교생 홍건표와 이명우 등도 북한에 납치·억류되어 있다. 이는 김정일이 ‘6·25때 월북자는 나이가 많으므로 새로 남조선 사람들을 납치하여 공작에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자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납치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확인된 휴전 후의 피랍·억류자는 486명이다.

이들 피랍·억류자들 중에는 1969년에 납치된 대한항공 스텔러디스 성경희, 정경숙 등과 같이 대남 방송에 활용되거나, 홍건표, 이명우의 경우처럼 대남 공작원들에게 한국의 실상과 말씨 등을 교육하는 “이남화 교육”의 교관으로 쓰이는 사람들도 있다. 귀순자 안명진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60 여 명으로부터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하여 생활실상 및 생활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공작원 출신 최정남도 평양시 순안초대소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홍교관(홍건표), 마교관(이명우)으로부터 안명진이 받았던 교육과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13) 가장 최근에 발표된 戰後 납북자 명단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3년, 부록 참조.

2.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집단수용소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근의 식량사정 악화로 결식·유랑민들을 수용하는 시설 외에 5~6곳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와 30여 곳의 강제노동소 및 노동교양소와 교화소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곳은 정치범 수용소이다. 이를 북한당국은 ‘○○호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주민들은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이주구역’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몇 단계를 거친 후인 것으로 보인다.

가) 강제수용소의 변천: ‘특별노무자수용소’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북한의 강제수용소는 해방 직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당시 미국 국무부가 노획한 북한의 한 문서에 따르면 1947년 10월에 이미 17개소의 ‘특별노무자수용소’가 있었다.¹⁴⁾ 그런데 이 수용소들의 수감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과 면회도 할 수 있고, 영화관람을 위해 외출도 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특별노무자수용소’는 현재의 정치범 수용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며, 서방세계의 일반 형무소 모습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강제수용소 모습으로 변해 간 과정에 대해서 다소 다른 설명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실은 김일성·김정일의 권력투쟁과 계급정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탈북자 김용 씨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정치범 관리소는 1972년에 전 국가보위부장 김병하의 發起와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수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없애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초기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1968년에 황해남·북도의 군사분계선 주변지역인 개성, 금천, 용연, 장연, 안악, 은율, 취하, 장풍, 개풍, 판문 등

14) Hagiwara Ryo (ed.), *Kitachosenno himitsubunsho* (North Korean Confidential Documents), Vol.1, (Tokyo: Natsunosyobo, 1996).

지에 거주하던 월남자 가족과 6·25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자, 한국군과 미군에 협조한 자, 지주, 친일파 본인들과 그들의 가족을 북쪽의 주민들과 거주지역을 교환한다면서 화차에 실어서 12곳의 험준한 산악지역에 설정해 놓은 특수구역으로 대대적으로 이주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 외부와의 접촉은 물론 서신 거래도 못하게 하는 등 사회와 완전히 차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1966년 4월에 실시한 주민들의 사상조사 사업인 ‘주민재등록사업’과 1967년 5월에 ‘유일사상체계’를 노동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한 뒤에 취해진 조치이므로 계급정책의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수용소의 형태를 완전히 갖춘 것이 아니었고, 수감자 관리와 시설 운영은 사회안전성 안전과가 담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격리 수용된 사람들 중에서 본인에 한해 죄가 엄중하다고 분류된 사람들은 개천교화소와 청진에 있는 수성교화소를 정치범 교화소로 개조하여 별도로 수용한 것이 정치범 수용소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의 始原을 이보다 더 앞선 시기로 보는 증언과 주장도 있다.

탈북자 강철환 씨의 주장에 의하면 함경남도 요덕군에는 1959년 이전에 이미 강제수용소의 일부분이 건설되고 있었던 것 같다. 요덕군의 비옥한 지역에는 原住民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시기부터 他地에서 추방당해 온 사람들이 원주민과 섞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 1959년경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강제이주가 시작되어 1964년경에는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1958년 연말에 시작되어 2년간 계속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장엽 씨는, 정치범 수용소(통제구역)가 1958년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종파분자들’만 그 곳으로 보내다가 나중에는 ‘반 김일성분자’ 등, 정치범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을 머리꼭대기까지 잘못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보내 격리시켜 살게 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 결과로 1958년말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탄광지역에 정치범 수용소가 처음 설치되었다고 한다.¹⁵⁾ 요덕수용소도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은 1966년부터 1년간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7

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3』, 2003, p.170.

년부터 1970년까지 전 주민을 3계층 51개 부류로 나눈 뒤에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 중 ‘종파분자 및 반혁명분자’ 약 6,000명은 처형하고, 처형에서 제외된 15,000여 세대 및 가족 70,000여 명은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거하여 산간벽지에 설치된 149호 대상지역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은 특별독재대상 구역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다.¹⁶⁾

그런데 김일성이 1968년에 “관리소 안에서 계급의 원수들이 폭동을 번번이 일으킨다면 군대를 배치해서 다시는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던 것으로 봐서 1968년 이후에 각 경비소에 군대(경비대)가 배치되어 오늘날의 수용소 형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68년 내지 1969년경을 오늘날의 정치범 수용소의 始原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 북한은, 1980년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에 권력 세습 반대자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약 15,000여 명을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감하였으며, 동구공산권의 붕괴 이후 1990년대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이 확대·개편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1997년 현재 평남 개천, 함남 요덕, 함북 회령·청진 등지에 최소한 15만 명 이상 (최근에 Pierre Rigoulot 씨가 인용한 한국의 한 정보기관원이 언급한 수는 약 21만 명)을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16) 상계서, pp.170~171.

17)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수용인원 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그간 反 北韓 선전 차원에서 과장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인사와 단체들이 있다. 공개된 정보는 소수의 탈북자들이 증언한 것이 전부이고,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한정되어 있어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다.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초기모습에 대해서는 알리 라메다 (Ali Lameda) 씨의 사리원 수용소(대규모의 정치범 교화소로 추정됨)에 대한 증언이 유일하고, 22호 관리소 경비원 출신 최종철 씨가 극히 제한된 증언을 하고 있으며, 13, 22, 26호 관리소에서 경비대 운전병을 지냈던 안명철 씨만이 비교적 많은 증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탈출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김용 씨 또한 14호, 18호 관리소에 대한 많은 증언을 하고 있다. "Ali Lameda: A Personal Account of the Experience of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publication of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Index: ASA 24/02/79), in Haruhisa Ogawa & Benjamin H. Yoon, VOICES FROM NORTH KOREAN GULAG (Seoul: Life & Human Rights Press, 1988); 안명철, 『그들이 울고있다』, 천지미디어, 1995; 김용삼, “『북한의 아우슈비치』 14호 관리소의 내막”, 월간조선, 2000년 5월호. 그런데 본 발제자는 베트남의 경우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남부해방’ 후 ‘북화정책’을 실시하면서 40만 ~ 80만 명을 ‘개조학습장’으로 보냈다. 물론 팜 반 동 (Pham Van Dong)은 1977년 4월에 겨우 50,000명만이 ‘개조학습장’에 수용되어 있다고 언명했다. Joël Kotek et Pierre Rigoulot, *Le siècle des camps*, (France: JC Lattès, 2000), p.657.

나) 정치범 수용소의 종류와 최근의 변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함경남도의 요덕, 단천, 덕성군, 함경북도의 온성에 2곳, 회령, 화성, 부령군, 평안남도의 개천, 북창군, 평안북도의 천마군, 자강도의 동신군. 이 집단수용소들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에서 알려진 바는 다음과 같다.¹⁸⁾

14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평안남도 개천군 보봉리에 위치하며, 수용인원은 1만5천 명 정도이다. 1950년대 말~1960년대 말 사이에 김일성 체제에 반대했던 당, 정, 군의 고위관료들과 그들의 가족·친지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다.

1999년 12월에 귀순한 탈북자 김용 씨의 경우를 보면, 간첩죄로 처형된 사람들의 가족도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 씨는 아버지가 1957년에 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뒤에, 호적을 위조하여 전쟁고아로 신분위조를 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 1993년 5월에 수용된 경우이다. 당시 14호 관리소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15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하며, 수용인원은 2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 수용소에는 월남자 가족,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재일교포 가족 중에서 당과 국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사람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는 당, 정, 군에서 혁명화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도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 혁명화 대상자는 공민권을 유지한 채 수용되며, 일정기간(최소한 3년)이 지난 후에 석방되는 사람들로써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관리소는 강철환 씨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수감돼 있던 곳으로 1992년에 탈북해서 한국에 온 이후 탈북자 안혁 씨와 함께 그 실상을 외부에 알려 왔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요덕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서 출소한 탈북자들도 최근 잇달아 입국하고 있어 비교적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6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함경남도 화성군 고창리에 위치하며, 1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 전 부주석 김동규의 경우처럼, 1970년대~1980년대 초 사이

18)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4년 8월, pp. 65~66.

에 김정일 후계체제 형성과정에서 이에 반대했던 반당, 반혁명 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다.

21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함경남도 경성군 창평리에 위치한다. 박금철, 김도만, 최창익, 김광협 등 1950년대 말~1970년대 초 사이에 김일성 체제를 반대했던 고위관료들과 그 추종세력들 1만5천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청진시 수성 정치범 교화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청진시 수남구역에 위치하며, 약 3천명이 수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평양에서 추방된 인사들의 가족, 종교지도자 가족, 재일교포 가족 등으로 국가·사회체제에 반항했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 그 실례로 재일교포 출신 강희택 씨의 가족, 황해남도의 목사와 장로들의 가족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18호 관리소: 인민보안성 소속,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리에 위치하며,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월남자 가족, 종교인 가족, 상습범죄자 가족, 혁명화 대상자들이 수용된다. 이들은 醫師 황순일의 경우처럼, 사회제도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다가 억류된 사람들로서 공민권은 유지하며, 일정 기간 수용된 뒤에는 사회에 환원된다고 한다.

탈북자 강명도 씨는 이외에 17호, 19호, 22호, 23호 관리소에 수감된 인원만 3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18호 관리소와는 달리,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관리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모두가 공민권을 박탈당한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그런데 2002년 12월에 22호 정치범 수용소의 일부인 행영지구와 중봉지구가 위성사진으로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다. 회령시의 중봉리, 굴산리, 행영리, 락생리, 사을리, 남석리 등에 위치한 이 수용소에는 현재 5만 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⁰⁾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완전통제구역(특별독재대상구역)’과

19) 강명도, “북한의 인권”, 『통일안보포럼, 북한의 인권문제』,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1997년 11월 21일.

20) John LAKIN, “North Korea Exposed - Kim’s Slave Camp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 12, 2002, pp.14-1

‘혁명화(대상)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해 왔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 수감되는 곳으로 아직 외부에 그 실상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최근 증언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범 수용소가 거의 완전통제구역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혁명화구역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가족연좌제에 의해 가족 전체가 수감됐던 과거와 달리 당사자만이 수감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철환 씨의 설명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는 요덕수용소(15호 관리소)의 경우 요덕군 구읍리, 립석리, 대숙리를 포함해 수용소 면적 절반 정도가 ‘혁명화구역’이었고, 벼농사가 가능한 평야지대인 룡평리, 평전리가 완전통제구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7년경 구읍리, 립석리 혁명화구역이 완전통제구역으로 되면서 이 지역에 수감돼 있던 가족세대는 요덕수용소의 끝자락에 위치한 대숙리로 옮겨가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수용소의 80%가 완전통제구역으로 변하고 대숙리만이 혁명화구역으로 남았다는 것이다.²¹⁾

최근 입국자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 다시 혁명화구역의 가족세대가 완전통제구역으로 옮겨가거나 대거 출소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에 입국한 이영희 씨(가명, 38세, 1995년 출소)에 따르면 혁명화구역의 수감자들은 1987년부터 꾸준히 풀려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 온 북송교포 세대가 먼저 나가고 일반 세대도 점차 풀려났다고 한다. 강철환 씨도 기억하고 있는 수감자들로, 1984년 일본에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아들·딸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됐던 이춘옥 씨 가족은 출소해서 현재 함남 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년 이상 장기 수용돼 ‘관리소 고정재산’으로 불리던 북송교포 김대인 씨 가족과 박순옥(일본인 처였던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사망) 씨 가족은 다시 완전통제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처럼 ‘악질반동’으로 분류된 가족세대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관리소 측은 이들을 사회로 내보낸다고 안심시킨 후에 사람과 짐을 국가안전보위부 트럭에 싣고 이동시켜버렸다고 한다. 여기에는 在獨 학자로 가족과 함께 북한에 들어갔다가 간첩 임무를 띠고 다시 유럽으로 나온 후 한국으로 돌아온 오길남 씨의 부인인 신숙자 씨와 두 딸 혜원, 규원이

21) 강철환, “요덕수용소에선 지금 무슨 일이?, 탈북자들 ‘살벌기류’ 증언”, NK조선 2001년 11월 9일, <http://db1.dbchosun.com/cgi-bin/gisa/artFullText.cgi?where=%28%2>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의 김일성 전용기 조종사였다가 1978년에 ‘결가지사건(김정일 이복동생 김평일과 연루)’으로 수용됐던 김형락 씨와 그의 아들·딸, 그리고 1978년에 월남한 이영선 씨의 부모 형제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혁명화구역에 남게 된 800~1,000명 가량의 독신자들은 대부분 해외파견자, 탈북미수자 등이라는 것이다. 1996년에는 러시아에서 신형전투기를 몰고 오기 위해 교육받던 비행사들이 북한체제를 비판하다가 “비행기를 몰고 주석궁을 들이받을까”라고 농담한 것이 보고 되어 11명의 비행사 가운데 8명이 수용소에 끌려왔다고 한다. 1998년에는 신의주에서 반정부 사건이 일어나 200 여 명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수감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요덕수용소에 수용됐던 이백룡(가명) 씨는 “97년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과 관련해 인민군 장성과 군관(장교)들도 대거 숙청돼 수용소로 끌려왔다”고 말했다.²²⁾

식량난이 본격화되면서 요덕수용소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한다. 이백룡 씨는 “대숙리의 800명 독신자 가운데 1년에 200명이 영양실조와 강제노동으로 사망했다”고 증언한다. 이들은 하루 80g의 옥수수과 시래기국으로 연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수들은 보충되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요덕수용소에서는 한때 국제 인권단체에서 요덕을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겨울에 집을 모두 부수고 땅을 파고 20일간 기거하면서 추위에 떨기도 했다고 이백룡 씨는 증언한다.²³⁾

현재 북한에 있는 6곳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14호, 15호, 16호, 18호, 22호, 수정 정치범 교화소)는 파악되고 있으나, 11호 경성 가족수용소(1989년 10월 위치 변경), 12호 온성·창평 가족수용소(1987년 5월 위치 이동), 13호 종성 가족수용소(1990년 12월 이동),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전동 본인 수용소(1990년 1월 이동), 27호 천마 가족수용소(1990년 11월 위치 변경)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²⁴⁾ 그러나 앞에 소개된 증언들이나, 2000년 5월에 귀순한 북한 ‘정치범’ 출신 (1995년

22) http://monthly.chosun.com/html/200101/200101220008_5.ht

23) 상계증언.

24) 『북한인권백서, 2003』, p.179에서는 안명철 씨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이 수용소들이 해체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해체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용소에 통합 내지 이동 재배치된 것인지, 피수용인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4월 25일~1999년 1월 5일, 요덕수용소 수감) 탈북자 이백룡 씨의 사례를 보면 가족 연좌제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혁 씨와 같이 단순히 중국을 다녀온 것만으로 중범죄자로 취급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일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북한의 위정자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된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경제난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사회질서가 과거처럼 유지되기 힘들어졌고, 탈북자들이 워낙 많아 이들을 모두 과거처럼 엄하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3. 사회·경제적 난민들

1980년대 말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북한은 1995년 8월말의 대홍수 이래로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300만~350만 명의 餓死者와 20만~30만 명의 탈북자를 양산하였다.

불교계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1998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40여 명의 조사원을 중국에 보내 중국의 동북3성(吉林, 黑龍江, 遼寧) 지역 2천 4백 79개 마을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2만 8천 4백여 명의 북한난민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이 이 지역 전체주민의 1.7%인 점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서 12만~20만 명이 사는 것으로 ‘좋은벗들’은 밝히고 있다. 그런데 중국 내의 다른 지역에 숨어사는 북한사람들과 떠돌이 어린이들(일명 꽃제비)을 감안한다면 당시에 30만 명 이상의 북한난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난민 중에 여성의 비율이 75.5%에 이르고, 이들은 중국인과 강제결혼을 하였거나, 인신매매로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난민들의 인권문제는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와 성질을 달리하지만 여자와 어린이들이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近者에 와서 식량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식량난민은 줄었다고 하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반복적으로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체포·송환이 강화되고 있어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인신

매매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피 송환자들을 철사로 코와 손을 꿰어 송환했다’는 목격담이 한 미국인 사업가로부터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²⁵⁾

4. 일반적 인권유린

2천 2백만 명의 북한 주민 중에서 300만~350만 명의 餓死者와 20만~30만 명의 탈북자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정자들은 국가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瓦解 현상과 국가장치의 硬性化 현상의 결합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키고, 일반주민들의 일상사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런 포괄적인 인권유린상황은 북한주민들의 인성에도 영향을 주어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부분으로서 전체주의 억압체제가 갖는 포괄적 인권유린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 포괄적 의미의 인권억압에 대해 단편적인 지적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특히 사회심리적으로 갖는 의미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이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교화소 혹은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에 갔다 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9·27 어린이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데,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인성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지를 짐작하게 한다.

25) <http://srch.chosun.com/cgi-bin/www/search?did=973914&OP=5&word=탈북%20코%20중국&name=&dtc=&url=&title=> 이와 같은 목격담은 재중 한인교포(조선족)들에 의해 여러 차례 국내에 전해진 바 있다.

Ⅲ.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사회적 동인들

1. 계급적 차별정책

북한인권문제의 중요한 한 측면은 제한된 사회적 제 가치들을 핵심계층에 집중시켜 체제의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소외된 일반인들과 체제 이탈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사회는 지난 40여 년의 계급정책 결과로 과거의 불평등 체계는 해소하였으나,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 체계를 제도화시켰다. 즉, 다른 어떤 사회와도 달리 출신 성분과 배경에 따른 계급차별이 새로운 불평등 구조의 주요 축을 이루면서 북한주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있어서 層化된 위계서열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前述한 ‘3계층 51개 부류’는 1950~60년대에 실시된 주민조사사업에 의거한 것이고, 당시의 계급구성원들이 이제는 고령화되어 사망했거나, 사회활동연령을 넘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차별정책의 결과로 야기된 낮은 사회통합과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구조적이고 포괄적으로 유린하고 있다.

통일원에서 1990년에 발간한 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현재와 같이 사회적 이탈현상이 심각해지기 전에도 핵심계층 5백98만 명 (28%), 동요계층 9백62만 명 (45%), 적대계층 5백77만 명 (27%)으로 나뉘어졌다. 이는 북한정권이 40년 이상의 공산화 과정을 통해 체제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회계층의 구성비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6.1%에서 28%로 상승). 그 뿐만 아니라, 평양 시민들과 지방주민들 간의 각종 기회불균등이 제도적으로 강요됨에 따라 지역적 片鱗化 현상이 심각하고, 5백77만 명 (27%)의 적대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40년 이상에 걸친 북한의 계급정책이 계급구성원만 바꾸었을 뿐, 사회통합을 높이고, 지지계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최근의 식량난은 이런 사회통합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민족통일연구원(현 통일연구원)에서 1996년에 수행한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브레진스키 지표와 척도를 기준으로 할 때 당시 북한체제의 위기지수는 17을 상회하여 붕괴직전의 소련(15), 체코슬로바키아(16), 루마니아(18) 등의 수준과 근사

하여 체제위기에 진입했다는 것이다.²⁶⁾ 북한의 위정자들은 이러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2. 북한 노멘클라투라의 인권의식 결여

강명도 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위정자들은 ‘인권’에 대해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인권이라는 말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무의미하며, 오직 노동자 농민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만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일반주민들에게 수십 년 간 주입한 결과, 대다수의 북한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노멘클라투라 즉, 특권층의 체제접합도와 인권의식이 지배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멘클라투라의 체제접합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권개선의 필요성도 덜 느낄 것이며, 현 인권상황의 극복도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취할 경우 사회의 변동과 일반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제도화 해내지 못하고, 노멘클라투라의 의식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내지 못하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단기간에 있어서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3. 북한주민들의 억압된 권리의식

M. 하라스치(Miklos Haraszti)에 따르면, 동구에서의 시민사회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국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탈 전체주의’(post-totalitarianism)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동구에서의 시민사회 발전단계를 ‘탈 스탈린주의’(post-Stalinism) 단계, 탈 전체주의 단계, 탈 공산주의(post-communism)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북한은 아직 첫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시민사회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아직時機尙무일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북한주민들의 시민권 의식이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권리 행사에 대해서도 ‘자유주의’, ‘황색바람’의 이름으로 억압을 가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26)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12., p.23.

와 각종 통제장치의 작동을 통한 극도의 공포정치는 시민적 권리에 대한 주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북한의 인권상황의 근본적인 원인규명은 북한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억압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 인권상황의 개선책 마련은 바로 이 억압된 북한주민들의 권리의식을 회복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후기공산사회에서의 분화와 통제

E. 헨키스 (Elemér Hankiss)는 1980년대 말의 헝가리에는 사회의 지배적 (공식적) 영역과는 다른 조직원리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의 제2 영역 즉, 일종의 “2차 사회”(Second Society)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감시와 처벌이 심한 전체주의 사회에서 주민들은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무모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또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개인주의와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또 하나의 사회를 바클라프 벤다는 병행사회(parallel society)라고 불렀다.²⁷⁾ 헨키스에 따르면 1차, 2차 사회는 헝가리 국민들의 서로 다른 집단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조직원리 세트에 의해 각각 지배되는 사회적 존재의 두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당시 헝가리의 1차 사회와 2차 사회를 확연히 구분 지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2분법적인 변수들을 제시했다. 즉, 동질성 대 분화와 통합, 수직적 조직 대 수평적 조직, 하향 대 상향, 國家化 대 非國家化, 중앙집권화 대 비중앙집권화, 정치지배 대 사회·경제 지배, 理念 대 沒理念, 가시성 대 비가시성, 수용성 대 비수용성 등. 헨키스에 의하면, 이런 “체계와 체계 외적(system-foreign) 조직원리”는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공공영역, 문화생활, 사회의식, 정치적·사회적 상호작용 분야에 나타난다는 것이다.²⁸⁾

어느 사회나 절대 빈곤층이 있고, 정치·사회적 이탈자들이 있다. 그러나 현 북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식량난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식구들이 헤어져서 마침내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지식인과 중류층 이상의 사회 구성

27)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나남출판, 1995.

28) Elemér Hankiss, "The "Second Society": Is there an alternative social model emerging in contemporary Hungary?." Social Research, Vol.55, Nos.1-2, 1988 (Spring/Summer).

원들이 사회적 일탈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생산활동이 중단되었고, 교육기관이 마비되어 현재의 난국을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토대가 붕괴되었다.

그런데 국가의 기구는 거대하여 공안사건이나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통제가 철저하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다. 1999년에 들어와서 북한당국은 50~60년대의 천리마운동을 다시 전개하며 농민시장 (장마당) 출입을 55세 이상의 주부로 제한하고, 젊은 남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는 등, 경제재건을 위해 대중동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기반이 워낙 심하게 파괴되어서 외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기공산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설명되는 사회의 제2 영역 즉, 비공식적인 영역의 성장은 북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탈북·망명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주민들은 '1차 의식'인 주체사상, 집단주의에 따라 사회주의공동체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의 유일지도체계에 순종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 '2차 의식'이라 볼 수 있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온정주의, 소시민적 성향 등을 일반화된 가치정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의론자(non-confirmist)적 의식과 문화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지하음악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한국 및 서방의 언론기관에서 탐방·관찰한 바로는, 주민들을 직접 지도·통제하는 일선 간부들이 주민들의 '2차 의식'에 대해 방관하고 있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공안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가 거의 포기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현재까지는 북한사회에 큰 변화를 야기 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경제특구들을 지정하면서도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소개한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현 위기상황이 극복되지 못하면 위기지수가 2001년~2008년 사이에 체제변혁의 臨界點을 통과한다고 한다. 계량적으로 이 시기는, 탈북자들이 북한체제의 지탱 이유로 지적한 '공식이념의 기능'과 '사회통제'라는 두 가지 지표들의 위기지수 변화의 최적함수가 체제변혁의 임계점인 3.0~3.5를 통과하는 시점이

다. 체제 개혁 없는 ‘경제관리개선조치’들로 이런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혁·개방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미국, 일본 등과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2차 의식’, ‘2차 경제’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규모의 餓死와 탈출은 북한사회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조직적 저항사건도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 정치체제의 붕괴조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찰자들을 의아스럽게 한다.

이는 그간에 북한의 위정자들이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현 인민보안성),”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인민반” 조직 등을 통해 사회를 종적, 횡적으로 통제해온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런 항시적 통제장치 외에 ‘9·27 상무위원회’ (1995년 9월 27일에 김정일이 “전국의 방랑자들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지시에 의해 조직되어 감옥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98년 겨울이후에 조직과 명칭이 개편됨) 처럼 상황별 통제장치도 만들어 운용할 만큼 통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신속하고, 불만·저항자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기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체제붕괴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의 통제기제가 일상사에 깊게 침투해 있고, 하급관리자들에게도 공권력의 권위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일꾼에게 시비를 따졌거나, 행정일꾼에게 달려들었거나, 조직책임자에게 잘 보이지 못한 사람들을 강·절도, 강간범 등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여 노동단련대에 보낸다고 한다. 이는 통제가 유연하면서 깊게 침투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저 발전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가부장제 (neo-patrimonial system)’가 북한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패의 차원을 넘는 국가권력의 사유화현상으로서 사회체계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의 천안문사태(1989년 6월)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킴으로서 후기공산사회에서 야기되는 체계외적 조직원리와 이에 대한 통제간의 균형을 파괴시켜 대규모의 인권유린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의 북한인권상황에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면, 확장되는 사회의 제2 영역 (“second social sphere”)을 통제하려는 북한의 지도부와 새롭게 요구되는 시민적 자율성간의 마찰에 의해 인권유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공산주의체제에서는 정치이념이 사회에 침투하여 통합(integration)과 규제(regulation)를 하고 있다. E. 뒤르케임(Emile Durkheim)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통합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적 통합의 수준이 대단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사회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에 사회제도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사회적 무질서(social disorganization) 속에서 지속적인 역동적 균형(continuing dynamic equilibrium)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정치체제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악화될 소지는 명백한 것이다.

IV. 인권침해 양상

1. 북한 내 억류자들의 생활

가) 6·25전쟁 억류자

이항구 씨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군포로는 3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범주는 그들이 붙잡혔던 현지 일선에서 전투나 경찰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한국군 전쟁포로로 북한에 40년 이상 억류되어 있다가 1994년 10월에 남한으로 탈출·귀환한 조창호 소위는 이 범주에 속한다. 조창호 소위의 탈북 이후, 양순용, 장무환, 박홍길, 이영석 등 21명의 한국군포로가 탈북·귀환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복구업무를 하는 것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 범주는 한반도의 최북단인 벽동군 등지에서 수용된 포로들이다. 휴전 이후에 송환된 한국군포로들의 대부분은 이 세 번째 범주에 속하며 처음 두 범주의 포로들은 거의 송환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전쟁 당시 북한에 최소한 29개의 포로수용소가 있었고, 중국에도 18개의 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1951년 12월에 공산군이 제시한 명단 상의 한국군포로는 대부분 북한의 11개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포로들이다. 당시 미국 정

보기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포로명단에서 누락된 한국군포로들의 수용소 위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중강진(동경 126도 50분, 북위 41도 48분), 강계(동경 126도 36분, 북위 40도 58분), 신의주(동경 124도 24분, 북위 40도 06분)와 중국의 Antung (동경 124도 20분, 북위 40도 10분), Mukden (동경 123도 30분, 북위 41도 45분), Peiping-Tientsin (동경 116도 25분, 북위 39도 55분).²⁹⁾

이항구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정찰중대 분대장으로 있었던 조선인민군 제 22여단은 1951년 10월 9일에 창설되었는데,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국군포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 부대에서의 한국군포로들에 대한 주요 훈련내용은 그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육이었다. 6~8개월의 훈련 뒤에 이 포로들은 여러 부대로 나뉘어졌다. 그 중의 하나가 철로복구를 주 임무로 했던 인민군 584부대였다. 이 부대의 산하에 한국군포로들로 구성된 3개의 여단이 있었고, 각 여단은 2,000~5,000명 정도의 포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유엔군은 공산측 수송선을 효과적으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철로에 시한폭탄을 투하하였다. 이 폭탄은 투하되면 철로 변 땅속 1~2m에 박혀 있다가 수시로 폭발했는데, 이것을 캐낸 뒤 인근의 논·밭으로 가져가 폭발시키는 것이 한국군포로들의 임무였다. 4~8명이 한 조가 되어 일을 했는데, 사고율이 높아서 대개 한 사람이 다섯 번째 일을 넘기지 못하고 변을 당하였다고 이항구 씨는 진술한다.³⁰⁾

한국군포로들로 편성된 또 하나의 부대가 인민군 218군부대였는데, 평양, 신의주, 온천, 황주에 있는 비행장의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다. 이 작업 역시 폭격의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다고 한다.³¹⁾

북한당국은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군포로들을 제대시키기 시작해서 1956년에는

2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VII, Korea and China Part 1 (Washington, D.C.: U.S.G.P.O., 1983), pp.1399-1400.

30) 『조선일보』, 1994년 7월 10일.

31)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나, 적지 않은 한국군포로들이 공산측의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미하원 국가안보위 군인소위원회에서 1996년 9월 17일에 개최된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 실종미군관련 청문회에서 전 체코군 고위관계자 잔 사스나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군사보좌관이었던 필립 코로소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전 발발 직후에 소련은 북한에 병원을 세워 포로들을 대상으로 각종 인체 및 심리실험을 했다고 한다. 소련은 심지어 한국군, 미군 등 각 국가별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인종들이 특정 약물, 생화학무기, 방사능 등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도 실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소련, 체코, 중국 등에도 실험용으로 집단적으로 보내졌으며,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북한에서 실험대상으로 쓰이던 포로들 중 약 100명 정도는 살아 있었는데, 체코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후 소련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6년 9월 19일.

완료했다. 이 포로들이 “해방전사”라는 딱지가 붙어 사회로 내보내졌지만, 대부분이 광산, 협동농장, 제철소에서 힘든 일을 계속해야만 되었다. 귀순한 북한 간첩 강대진 씨에 의하면, 1950년 중공군에게 포로가 된 박승일 대령과 고근홍 대령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한국군포로들은 1960년대에 황해도의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했다. 조창호 씨는 북한에 억류되었던 40 여 년 동안 아오지 탄광 등에서 노동을 했는데, 자신이 1953~1957년 동안에 갇혀 있던 “아오지 제1특별수용소”에만도 300~400명의 송환되지 않은 한국군포로가 수감되어있었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포로가 장티푸스, 콜레라, 발진티푸스, 폐결핵과 같은 전염병으로 죽었으며, 자신의 손으로 묻어준 한국군포로만도 100명이 넘는다고 증언했다.³²⁾

최근에 국방정보본부가 196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순·귀환한 18명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1994년에 국방군사연구소(國防軍史研究所)가 조사한 귀환전쟁포로 13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국군포로들의 북한 억류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

북한에서 석방되거나 제대한 한국군포로들은 재정비정책을 겪었다. 이 정책에 따라, 포로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2~3차에 걸쳐 “통제구역”이나 농촌에 보내졌다. 1980년대 초에 북한 당국은 아주 소수의 포로들에 대해서 노동당 입당과 간부임용을 허용하였다. 이런 상대적인 완화조치는 국가안전보위부 및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포고의 기본적인 틀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군포로는 광산, 공장, “통제구역”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 그들의 생활은 항상 국가안전보위부의 통제와 감시 속에 있었다. 탈북·귀순자 강명도 씨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 출신이었던 최병남의 경우, 평양외국어학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1976년 8·18사태(판문점 도끼만행사건)가 발생하자 체포되어 국가보위부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³³⁾ 이 예는 국군포로출신들에게 ‘재정비 정책’ 혹은 ‘관대 처리 방침’ 등에 의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록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군포로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져 이혼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으며, 그들의 자녀 역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나마 이런 생활이라도 할 수

32) 군합동 신문조서(1994. 11. 5), 전화인터뷰(1997년 6월 26일자 방영 “돌아오지 못한 용사들”, 대구 문화방송 6·25 보도특집).

33) 강명도씨와의 1997년 11월 21일자 면담.

있는 사람은 전쟁동안 포로가 된 후에 인민군에 재입대한 경우이고, 다른 포로들은 교화소나 관리소 등지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20년 이상 광부로 일하다가 1996년에 탈북·귀순한 동용섭 씨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일했던 함경남도 허천군 소재 용양광산에서 1천 명 이상의 한국군포로들이 광부로 일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2km정도 떨어진 검덕광산에서는 수천 명의 한국군포로들이 엄중한 감시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40년 동안 그들의 외출이 결코 허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외부 여행을 금지하고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것이다. 동용섭 씨는 이러한 전쟁포로들은 절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남은 것이 아니며, 한국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³⁴⁾

나) 베트남전쟁 억류자

사실 우리는 베트남전쟁 한국군포로들의 억류과정과 북한생활에 대해서 매우 한정된 자료만 가지고 있다. 북한은 자국 내 한국군포로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역대 남한 정부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려 들지 않았다. 베트남전쟁 중에 박정희 정부는 한국군의 월남파병에 대한 야당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국군포로들의 존재를 부인했고, 실종자들의 숫자를 최소화했다. 이후의 역대 한국정부들도 자신들의 무책임함이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우려하여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최근에 와서는 남북한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³⁵⁾

비록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는 박정환 소위와 안학수 하사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군실종자의 억류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박정환 소위는 1967년 10월 15일에 태권도 교관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어, 1968년

34) 『중앙일보』, 1996년 8월 26일.

35)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전경수 교수가 한국사회사연구회 월례발표회 (1994년 4월 16일)에서 자신의 논문 “베트남 전쟁 동안의 한국군포로와 실종자”를 통해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한국군실종자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국방군사연구소(國防軍史研究所)는 1994년 6월 14일에 “월남전 실종자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부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결론부분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할 것을 제안했는데, 여론이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1월 30일 “구정공세(舊正攻勢)” 동안 사이공(Saigon, 현 호치민시) 근처 미토시(Mytho City)에서 전기 기술자인 김규식 씨와 함께 베트콩 민병대의 포로가 되었다. 그와 김규식 씨는 두 차례 탈출을 시도했다. 베트남에서 시도했던 첫 번째 탈출에서 그들은 일단 성공했으나 당시에 밀림과 농촌지역을 베트콩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다시 붙잡혔다. 그들은 월맹(Viet-Minh)으로 보내지는 “호치민 루트(Ho Chi Minh Trail)”에서 다시 탈출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베트남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던 캄보디아의 민병대에 의해서 붙잡혔다. 캄보디아 수용소에서 박정환 소위와 김규식 씨는 북한으로 가도록 강요받았으며, 북한으로 가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감금되어야 했다. 박정환 소위가 그들의 억류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캐나다 대사관에 편지를 비밀리에 보내는 데 성공하면서, 그들은 502일의 억류생활 끝에 석방되었다.³⁶⁾

박정환 소위와 김규식 씨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한국 군인이 일단 작전 중에 낙오되면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많은 한국군이 북한으로 보내졌을 것이다. 체포되어 있는 동안 박정환 소위는 북한으로 보내진 한국군 장교와 병사들의 명단을 보았는데, 그들은 한국정부에 의해서는 전사자(KIAs)로 분류되어 있었다. 셋째, 많은 한국 민간인들이 베트콩 민병대에 의해 포로가 되어 북한으로 이송되었다. 사실 베트남전쟁 동안 베트남에는 한국 군인과 비슷한 수의 한국 민간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박정환 소위와 김규식 씨가 귀국한 후에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침묵을 지키도록 요구했다.

안학수 하사는 한국군이 어떻게 베트콩에 의해서 북한에 보내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그는 제대를 며칠 앞둔 1966년 9월 어느 날에 실종되었다가 1967년 3월에 북한 라디오 방송에서 연설을 했다. 북한 당국은 안학수 하사가 본인 의사로 북한에 망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베트콩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이송되었던 것이다. 북한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1970년에 전향한 정차랑 씨의 목격담에 따르면, 안학수 하사는 다리에 상처가 매우 많았는데, 안 하사는 한 작업장에서 그 상처를 정차랑 씨에게 보여주며 북베트남(Viet-Bak)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입은 상처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³⁷⁾ 게다가 그가 어머니

36) 박정환, 『느시』, 전계서.

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마지막 편지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엄마, 이 편지 받고 답장하지 마세요. 곧 귀국하게 되니까 받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귀국할 때는 군의관들하고 비행기로 서울로 가게 되니까 서울 외갓집에서 기다려주세요.”³⁷⁾ 그러나 안하사는 북한 선전원으로 복무하며 북한당국이 써준 원고를 읽어야 했다.

한국 군인들은 일단 베트남 민병대의 포로로 잡히면 “호치민 루트”를 통해서 월맹(Viet-Minh)에 보내졌다가, 이어서 월맹에 파병되어 있던 북한군에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끌려간 한국군포로들의 북한 내 생활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안학수 하사와 박성열 병장의 경우, 북한은 이데올로기 선전에 그들을 이용할 목적으로 대중적인 환영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자국 내에 다른 한국군실종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그들을 남과공작원-간첩이나 특공대-의 교관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그 당시와 그 후에 한국 민간인을 납치하여 같은 목적으로 이용했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앞에 소개한 안명진 씨나 최정남 씨에게 소위 ‘이남화 교육’을 한 교관들 중에 베트남전쟁 한국군포로들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국군포로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구속되는 과정은 거의 납치에 가깝다고 한다. 구속할 사람이 개인인 경우, 사회안전부 등 일반 기관에서 정식 공문이나 전화로 불러낸 뒤에 통보 받은 장소로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을 납치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은 물론 통보한 기관에서조차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게 되어, 자연히 ‘행방 불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납치된 피의자들 중에 경미한 범죄나 확실한 물증이 없는 범죄에 대한 혐의자들은 ‘마람초대소’와 같은 국가보위부 비밀 초대소로 연행한다고 한다. 여기에

37) MBC 프로덕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베트남의 한국군 실종자들” 편, 2000년 7월 30일 방영, 비디오 카세트.

38) 金成東, “安鶴壽 하사·朴聖烈 병장은 포로가 된 뒤 납북됐다”, 『월간조선』, 2000년 9월호, p.266에서 재인용.

서는 임의로 기간을 연장해 가며(안혁 씨의 경우 1년 8개월) 조사를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억지 자백을 강요하며 얼마나 심한 폭력행위가 자행되는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간절히 자살을 원할 정도라고 한다.

조사가 끝나면 재판절차 없이 피의자는 ‘범죄자’가 되어 “죽을죄를 지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배려로 ○년 간 혁명화 지역으로 가게 된다.”고 말한 뒤에 수용소로 이송된다고 한다.

그러나 ‘중범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형기도 알려주지 않고 완전히 밀폐된 호송차에 태워 별도로 교화소로 이송되는데, 그가 잡혀가는 것과 동시에 여러 명의 보위부원들이 그 ‘범죄자’의 집을 급습하여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관리소로 이송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자’ 장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은 어떤 죄목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르는 채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취급하고, 재판이 없이 진행되어 무혐의 방면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한다.³⁹⁾

이상과 같이 북한에서 정치범을 수감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전 근대적이고 비인도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

가) 과도한 노동과 영양부족

수용소에서의 하루 일과는 수용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고, 각 수용소에서도 시기와 업무에 따라 다소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큰 틀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새벽 5시에 기상(안혁 씨가 수용되었던 요덕 15호 관리소에서는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를 하고, 6시 30분에 대열점검을 한 뒤에 7시에 작업장에 간다고 한다. 작업장에 도착하면 갥에 들여보내기 전에 몸수색을 하여 폭약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작업을 하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에 곧바로 20시까지 오후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덕

39) 안혁, 『요덕 리스트』, 천지미디어, 1995, pp.61~62.

15호 관리소에서는 오후에 휴식시간이 한 번 있는데 비해 14호 관리소에서는 없다고 한다.

김용 씨의 증언으로는, 14호 관리소에서는 토·일요일이 없고, 1월 1일 하루만 휴무하는데, 관리소 규정에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으나 이날도 노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4호 관리소의 경우 수감자들의 생산성이 워낙 낮아 생산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18호 관리소의 경우 생산계획이 있어 이 작업량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하루 평균 12시간 노동을 하는데,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량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통 23시까지 작업을 하여 하루 평균 15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⁴⁰⁾

김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14호 관리소 수감자의 한 끼 양식은 통강냉이 20~30알과 배추잎이 등등 뜯 소금국이 전부라고 한다. 그 결과 수감자들이 갯도에서 100미터 이동하는데 15분 이상이 걸리고, 삼질 한 번 하는 것도 현기증이 난다는 것이다. 수감자 대부분이 펠라그라(pellagra)라는 단백질 결핍증에 걸려 있으며, 영양 결핍에서 오는 각종 전염병과, 심지어 정신병까지 앓게 된다고 한다.

수감자들은 이런 극도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돼지사료도 훔쳐 먹고, 심지어 생선 저장탱크 씻은 물에 밥을 말아먹는 일도 있으며, 쥐와 벌레도 잡아먹고, 나무껍질도 벗겨 먹고, 풀도 뜯어먹는다고 한다. 그나마 이런 일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도원에게 들키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혹한 징벌을 받는다고 한다.

나) 수용소 내의 처벌: 구류장(특수 아지트) 감금, 공개/비밀 처형, 임의 처형

북한의 '정치범'들에게는 두 종류의 구류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용소에 최종적으로 수감되기 전에 예심을 받으면서 수감되는 '마람초대소'와 같은 구류장과 수용소 내의 구류장이 있는 것 같다.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40) 앞에 소개한 알리 라메다 씨도 사리원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이 하루 12시간 씩 노동을 했다고 증언한다. "Ali Lameda: A Personal Account of the Experience of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publication of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Index: ASA 24/02/79), in Haruhisa Ogawa & Benjamin H. Yoon, 전계서, p.33.

주는 것으로는 어느 쪽이든 비슷해 보이는데, 수용소 내의 구류장의 경우 수감자가 일단 끌려가게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식발한 후에 1차로 모두 매를 때려 초죽음을 시킨다고 한다.⁴¹⁾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두 무릎 사이에 4각 角字를 끼우고 24시간 동안 꿰어앉히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불손’하게 행동하면 사정없이 구타한다는 것이다. 하루에 100그램의 콩밥과 시래기 소금국이 지급되는데, 그것도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움직이면 처벌로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수감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일주일 후부터는 살이 썩어 들어가도 참는다고 한다.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폐인이 되어 들것에 실려 나가 5개월 후에는 병사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감자들 사이에는 구류장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⁴²⁾ 그런데 김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구류장을 18호 관리소에서는 “특수 아지트” 혹은 “영창”이라고 부른다고 한다.⁴³⁾

김용 씨는 14호 관리소에서 2년 동안 15건의 즉결처분을 목격했고, 18호 관리소로 이송된 뒤에는 3년 동안 30회 정도의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14호 관리소에서는 공개처형 대신에 주로 비밀처형을 했는데, 이렇게 공개처형이 비밀처형으로 바뀐 것은 수용소 내에서 너무 자주 공개처형을 해서 一罰百戒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감자들을 자극하여 1990년에는 이 관리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 1,500명의 수감자가 사살된 적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⁴⁾

안명철 씨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대는 도주자를 잡으면 크게 표창한다는 말에 수감자들을 사살하는 일이 빈발하였다고 한다. 수용소의 경계철조망으로부터 50미터 이내는 통행금지구역이지만 그 안쪽은 수감자들이 다녀도 되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87년 10월말에 13호 관리소 19반 농산분조 달구지공이 새벽에 쥐를

41) 북한에서 ‘정치범들’은 일반적으로 예심과정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 고문이 얼마나 혹독하고 인격 파괴적인지 피의자들은 자괴감에 빠져 자살을 간절히 바랄 정도라는 것이다. 물론 고문은 어떤 형태로든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저발전 사회에서 고문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정치범’에게 가해지는 고문은 “無知莫知하다.”는 표현이 가장 접잖은 표현일 것으로 보인다. 흔히 “筆舌로 다 形容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것 같다. 필자가 몇 편의 수기를 읽어보고 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은 다 읊과 같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가장 천박하고, 가장 야비하고, 가장 잔혹하게 정신적·육체적 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찾아보라, 그 모든 것이 북한의 ‘정치범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42) 안명철, 전계서, pp.107~108.

43) 김용삼, 전계기사, p.328.

44) 상계기사, p.339.

잡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경비원 강영철이 그를 사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피살자는 경계선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도주자로 몰렸으며, 강영철은 그 공으로 추천되어 1989년 8월에 김일성대학에 입학하였다고 한다.⁴⁵⁾

같은 맥락에서 1988년 함남 요덕 15호 수용소에서는 경비대원 2명이 산에서 부식토를 모으고 있던 수감원들을 강제로 철조망을 넘게 한 뒤에 사살했다고 한다.⁴⁶⁾

다) 영아 살해(嬰兒 殺害)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종파분자와 계급의 원수는 그가 누구이건 3대에 걸쳐서 씨를 없애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철저히 지켜진 결과는 ‘영아 살해’라고 볼 수 있다. 수용소에 가족 단위로 수감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또 다른 중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본인들은 죽음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되며, 아기는 곧 바로 살해되는데 그 방법 또한 “치참하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정도로 비인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영아 살해에 대한 증언은 여러 맥락에서 있어 왔다. 그 한 예로, 13호 관리소 19반 수감원 최 양(회계원)이 경비대 부소대장 김만순과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자 보위1과에서 아이를 개에게 던져주고 최 양은 性器와 배에 막대기를 꽂아 살해했다고 한다.⁴⁷⁾

다음은 2건의 영아 살해에 대한 이순옥 씨의 목격담이다.

「제가 1989년에 파라티푸스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뒤에 위생소에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위생소에 도착해서 출산을 기다리는 6명의 임산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관리원이 와서 저를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3명의 임산부가 모포도 한 장 없이 시멘트 바닥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수용소 의사가 워커 발로 임산부를 차는 것을 보는 것은 끔찍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그 의사는 외쳤습니다. “빨리 죽여 버려. 감옥에 있는 죄수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죽여.” 그 여인들은 손으

45) 안명철, 전계서, p.62~63.

46) 안명철, 상계서, p.64.

47) 안명철, 상계서, pp.40~41.

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 죄수 간호원들이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목을 비틀어 죽였습니다. 아기들이 죽자 더러운 헝겊으로 싸서 양동이에 담아서 뒷문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

1992년에 제가 늑막염이 걸렸다가 나아서 보고를 하러 같은 위생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약 10명의 임산부들이 좁은 위생소에 있었습니다. ... 저는 복도 밖에서 저의 관리원이 의사로부터 저를 넘겨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병옥(32세)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고 반쯤 열린 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막 출산하고 나서 외쳤습니다. “선생님,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제 시부모님들이 아기를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아기를 살려 주십시오.” 그녀는 너무 슬퍼서 정신이 나가있었습니다. 모든 다른 여인들은 조용히 있는데 그녀만이 울면서 큰 소리로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을 가다듬고는 외쳤습니다. “너 죽고 싶어, 응? 애를 죽여 버려!” 그는 그녀를 거세게 찼습니다. 그러자 위생소장이 들어와서는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구류장에 쳐 넣어!”라고 외쳤습니다. 위생소장은 그녀를 여러 차례 거세게 차고는 그녀를 구류장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구류장에서 풀려난 지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⁴⁸⁾

라) 여성들에 대한 성적 학대(性的 虐待)와 살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경우 얼굴이 예쁘게 생길수록 수난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위부장이었던 김병하는 관리소에 내려오면 자기 별장에서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골라 동침하고는 보위부 3국(예심국) 국장에게 넘겨 실험용으로 쓰이다가 죽게 했다는 것이다.

김영일을 통해 들은 김용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4호 관리소에는 간부 초대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 평양에서 부부장급이 내려오면 숙식하는 일종

48) “Babies Born and Killed, Witnessed by Sun-ok Lee, former prisoner of a political prison”, United Volunteers International to Stop North Korean Crimes against Humanity (e-mail: guygeo@softgram.com), Are They Telling Us the Truth? An Analysis and Summary of the Five North Korean Witness Accounts on the Crimes against Prisoners in North Korea, October, 1999, pp.193-194.

의 특각입니다. 평양에서 간부들이 내려오면 여성 수감자 중에서 얼굴이 반반한 21~25세 사이의 처녀들을 선발하여 목욕을 시킨 후 간부들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간부들은 이런 여성들을 온갖 性的 노리개로 삼은 후 비밀유지를 위해 「도주분자」로 몰아 비밀리에 죽인답니다.”⁴⁹⁾

그리고 김병하는 보위원들과 여자 수감원들 간에 성추문(부화사건)이 자주 생기자 모든 관리소에 얼굴이 곱게 생긴 여자들을 모두 죽여 버리라는 명령을 내려 1970년대 말에는 250여명의 여수감원들이 처형되었다고 한다.⁵⁰⁾

1989년 가을 경 종성관리소 풍계지구 17반 보위원 자살사건이 있었는데 안명철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7반 지도원(보위원)은 자기 담당 작업반 내의 정치범 여자들을 모두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그 중 통계원 여자 수감원이 임신을 했다가 발각되자 보위1과 계호원들이 그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밟아 죽이고, 산모의 음부에 지렛대를 박아 전기를 투입해 죽였다고 한다. 그 보위원은 정치범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하였다는 것이다.⁵¹⁾

마) 예고된 사고들

인명을 경시하는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각종 사고로 ‘정치범’들이 생명을 잃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안명철 씨가 11호 관리소에 경비원으로 있었던 1987년 6월 중순 어느 날 관리소 앞산 구역에서 불이 났는데 약 2,000명의 수감자들을 동원하여 불을 꺾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관리원들이 수감자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불 끄는 데에만 몰두하여 수감자들을 불 속에 몰아넣는 바람에 5명이 질식사하여 죽었고, 2명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⁵²⁾

안명철 씨가 22호 관리소에 있었던 1993년 10월 어느 날 초소를 허물고 다시 짓는 공사를 하면서 무리하게 서두른 바람에 골재해체 작업에 동원되었던 남녀 수감

49) 김용삼, 전계기사, p.339.

50) 안명철, 전계서, p.129.

51) 안명철, 상계서, pp.128~129.

52) 안명철, 상계서, pp.18~21.

자 20여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20여명은 락생지구 야산에 공동매장 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⁵³⁾

북한정부가 외화부족으로 제때에 軍犬을 확보해 주지 못하자 관리소에서는 수감자 감시를 위해 잡종견으로 民犬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이 민견들은 관리원(보위원이나 경비원)과 수감자를 구분하고, 수감자들에게 사납게 굴도록 길들여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89년 5월에 13호 관리소에서 이 민견들이 학교에 갔다 오던 동포지구 19반 ‘정치범’ 여학생(13살) 2명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후 관리소 부부장은 민견 관리병들을 ‘개를 잘 길렀다’며 칭찬하였다고 한다. 1991년 22호 회령관리소에서도 중봉지구 29작업반 여자 ‘정치범’ 2명이 산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민견에게 잡아먹혔다고 한다. 희생자들은 조용히 암매장되고 말았다는 것이다.⁵⁴⁾

V. 외부개입전략

1. 남북한 관계에서의 북한인권

가) 북한의 사회방위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피할 수 없는 2가지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즉, 북한사회가 E. 헨키스가 묘사한 바와 같이 2분법적으로 분화되어 가는 속에서도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체제, 더 구체적으로는 김정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압장치와 국가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권을 억압하는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억압장치를 당장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방위 즉, 통제 가능한 변화를 유도하고 도와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방위(Social Defense) 개념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개념과 종합안보

53) 안명철, 상계서, pp.91~95.

54) 안명철, 상계서, pp.118~127.

(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에 뿌리를 둔 개념으로서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의 Alain Joxe 교수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이 약화되어 사회통제(Social Control)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북한에, 통일의 동반자로 상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우리는 주력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사회의 분화과정에서 사회의 제2 영역이 제도권 내에 수용되어 지속적인 역동적 균형(continuing dynamic equilibrium)이 비효율적인 체제주변에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국의 대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 다차원순차적 접근

북한 인권문제의 제 사안들이 남북한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방위가 확보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이 상당히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이 사회적 취약성 때문에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채택으로 신뢰구축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고,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들을 통해 남북한간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신뢰구축은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런데 신뢰구축의 개별적인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독립적인 현안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본 사안에 대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손실보상점을 여러 다른 현안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한국은 각 영역에서 損益均衡點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영역을 교차하면서 최종적인 손익 균형점을 찾으려 해야 된다. 이는 일괄거래 협상방식 (Package Dealing)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괄거래방식은 이미 제시된 협상안들을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이지만, 영역교차방식을 통한 손익균형점 산정 방식은 多次元順次方式이므로 시간과 공간개념이 더 가미된 접근방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제 사안들에 대한 협상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유럽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시킬 것을 촉구한 결의안이 EU의 주도로 유엔 인권위원회 제59차 회의에 상정되어 지난 4월 16일에 채택되었다. 이로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 공론화 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가) EU와 북한인권

EU는 자유(liberty), 민주주의, 法治와 함께 ‘인권과 기본적 자유(fundamental freedom)에 대한 존중’을 창설원칙으로 삼고, 이 원칙들을 EU의 정통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점은 1992년에 채택되어 익년에 발효된 EU조약(마스트리트조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EU의 모든 활동영역에 투영되어 있으며, 대외정책의 초석이 되어 왔다.

사실, EU의 창립조약인 1957년 로마조약의 서문에 유엔헌장의 조문들이 EU의 지침 중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EU는 로마조약 이후로 ‘세계인권선언’과 그 보완적 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및 여타 국제적 혹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과 같은 지역적 인권문서들에 기술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⁵⁵⁾

아울러 1993년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EU 회원국이 되고자하는 국가들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 요건들로, ‘후보 국가들이 민주주의, 법치, 인권, 소수자(minorities)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1995년 5월부터 EC는 전반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과 양자간 교역이나 협력 협정을 맺을 때 인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때 이후로 인권조항들은, 어떤 특정 부문에 관한 협정들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 성격의 양자협정들에 포함되었다. 20여 개의 그런 협정들이 이미 서명되었다. 따라서 EU와 북한 간의 국교수립 문제가 제

55) The EU and Human Rights, <http://europa-eu-un.org/article.asp?id=1007> (검색일: 2003년 5월 15일).

기 되었을 때, 북한의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99년 7월부터 EU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왔다.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그해 10월 20~21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회의를 전후하여 김대중 정부가 대북 수교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EU 국가들은 북한과의 수교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간 EU가 추구해온 대외정책 상의 원칙들은 북한과의 수교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대북수교를 서두른 독일, 영국과 여타 EU 국가들 특히 프랑스와는 적지 않은 견해 차이도 있었다.⁵⁶⁾

그러나 수교과정에서의 입장 차이는 2000년 11월 20일에 EU의 총무위원회(General Council)에서 대 북한 행동지침(“EU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을 채택함으로써 정리·해소 되었다. 이 행동지침의 제 2조에서 “EU와 EU 회원국가들의 대 북한 관계개선에는 다음 요인들이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인권상황의 개선 특히, 인권에 관한 유엔 협약들의 준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외부지원에 대한 접근”, #“외국의 NGOs가 만족할 만한 조건 하에서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행동지침 제 3조에서 “EU와 EU 회원국가들의 정책은 북한의 입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야 된다”며, “그 단계에서는 2000년 10월 9일에 총무위원회(General Council)에서 결정한 인센티브와 부대조치들의 적용이 EU의 행동의 관건(a key element)”이나, “새로운 조치들이 적당한 시점에 EU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아울러 이 행동지침은, “EU가 북한과 이 문제들에 대한 특별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릴 것”과 프랑스, 영국, 독일 대표를 북한에 파견할 것을

56) ASEM회의 직전, 영국과 독일이 대북 수교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타 EU 국가들이 특히 프랑스가 ‘공조정책’을 주장하며 비판을 가하자 독일의 슈뢰더(Schroeder) 수상은 “어떤 시점에서든 북한에 대해 공조정책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고, 영국의 쿡 외상(Robin Cook)은,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맺으면 남북한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Pyongyang Welcomes EU Nations’ Positive Gesture”, http://www.korea-np.co.jp/pk/150th_issue/2000102702.htm (검색일: 2003년 5월 16일). 그러나 프랑스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 남북한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외국 NGOs에 대한 구속(constraints) 철폐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개방 등 인권문제를 대 북한 수교 조건으로 제시하며 유보 내지 거부 입장을 견지하였다.

57) EU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 Text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November 20, 2000. <http://www.info-france-usa.org/news/statmnts/2000/EU2000/korea.asp> (검색일: 2003년 5월 17일).

제시하고 있다.

비록 대북수교 접근자세에 있어 독일이 프랑스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이 행동지침이 마련되고, 인권문제를 중시했던 녹색당 출신의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주도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고, 그래서 수교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베를린에서 개최된 수교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양측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4일 동안 논쟁을 벌인 뒤에 이 문제에 대해 정기적인 대화를 갖기로 했다.⁵⁸⁾

북한과 수교를 한 EU 국가들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당국과 꾸준히 대화를 추구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냈으나 북한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⁵⁹⁾ 그래서 2002년 제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 북한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고대하고 있던 김대중 정부는 이런 EU의 시도를 만류하였다. 명분은, ‘이제 막 북한이 서방세계에 문을 열기 시작하였는데, EU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면 북한이 다시 폐쇄·고립정책을 취할 것이니 북한에 좀더 시간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정부는 EU의 결정을 존중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⁶⁰⁾ 당시 EU는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것을 고대하며, 향후 1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2002년은 재중 탈북자 문제가 국제사회에 크게 부각된 해였다. 즉,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북한당국이 노력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앞두고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P5_TA-PROV(2003)0034]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천명하게 된 것이다.

먼저, 유럽의회 결의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EU's rights, prioriti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59th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Geneva (17 March to 25 April 2003)] 전문 H항에서, ‘유럽의회

58) "Germany Gets Maximum Concessions from NK",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103/200103110153.html> (검색일: 2003년 5월 16일).

59) 주한 프랑스 대사관 데스쿠이엘 (François Descoueyete) 대사와의 면담 (2003년 5월 2일).

60)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와의 면담 (2003년 4월 8일).

는 그간 북한과 여타 인권 유린 국가들에 대한 결의를 勸起(sponsor) 하든지, 공동 발기 하라고 EU에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결의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하며, 전문 I항에서 "EU와 제3국간에 인권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사실이 EU로 하여금 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를 상정하거나, 다른 나라가 주도하는 것을 지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⁶¹⁾

본 유럽의회 결의[P5_TA-PROV(2003)0034]가 채택되기 전에 EU 의장이 유럽의회에 보고한 성명 (EU Presidency statement on the 59th Session of the UNCHR, Ref: CL03-027EN)에서는, EU 회원국 외무부 관리들로 구성된 COHOM 즉, '인권에 관한 위원회 실무단'(Council's Working Party on Human Rights)이 2003년 2월 5일 회의에서 이번 59차 유엔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현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1월 29일에 행해진 이 EU 의장의 성명에서 수단, 이라크,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인 정주(Settlement)에 대한 결의들에 대해서는 COHOM 내에서 이미 개략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결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본 발제자가 아직 확인 하지는 못하였으나, 2월 5일 COHOM 회의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논의와 최종적인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EU는 한국정부에 '금년에도 EU의 결정을 한국정부가 존중한다면, EU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 하겠다'고 통보하였다.⁶²⁾

마침내 2003년 3월 하순에 대북 인권결의 초안이 프랑스의 주도로 작성되어 4월 둘째 주에 EU 회원국가들 및 공동 발기(Co-Sponsor) 국가들 간의 논의를 거쳐 4월 15일에 상정되면서 완성이 되었다.⁶³⁾ 그래서 이 결의안의 최초 안은 불어로 작성되었던 것이고, 최종적인 안으로 상정되기까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본도 수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첨부자료 참조) 따라서 이번 대 북한 인권결의(E/CN.4/2003/L.31/Rev.1)는 오랜 기간에 걸쳐 EU 내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

61) 문서번호: P5_TA-PROV(2003)0033 (2003년 1월 30일 잠정편집)

http://www3.europarl.eu.int/omk/omnsapir.so/pv2?PRG=CALDOC&FILE=030130&LANGUE=EN&TPV=PROV&LASTCHAP=10&SDOCTA=7&TXTLST=1&Type_Doc=FIRST&POS=1
(검색일: 2003년 5월 18일).

62)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와의 면담 (2003년 4월 8일).

63) 본 결의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EU는 북한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했다고 한다.

안을 EU 주도로 매듭지은 것이다.

이렇게 유엔 인권기구의 권능을 이용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므로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금년 1년 동안 결의안에 명시된 내용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내년 봄에 있을 제 60차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결의안 1조 (e)항에 명시된 「식량권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종교적 불관용에 대한 특별보고관」, 「임의적 감금에 대한 실무그룹」, 「강제 혹은 비자의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하루 빨리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조사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나) 중·동부 유럽과 북한인권

본 발제자는 2002년 9월에 프라하에서 개최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준비모임”과 2003년 3월에 같은 지역에서 개최된 본 회의를 통해서 러시아의 Memorial, 체코의 People in Need Foundation, Organization for Aid to Refugees,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for Documentation and Investigation of Communist Crime, 폴란드의 Institute for Democracy in Eastern Europe Foundation, 슬로바키아의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 People in Peril Foundation, 마케도니아 Association for Democratic Initiativ 등 중·동부 유럽 인권운동가들을 접촉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코공화국의 하벨 대통령(Václav Havel)과 피트하르트 상원 의장 (Petr Pithart), 자오라렉 하원 의장(Lubomir Zaorálek) 등 체코의 정치지도자들을 만나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경험했던 바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고,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강하게 희구하였다. 본 발제자의 판단으로는, 중·동부유럽 국가에 대해서 북한이 비교적 적대감을 덜 갖고 있고, 아직 과거의 인적유대관계가 일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한 좋은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및 제언: 북한인권 교육과 북한 내 인권의식의 확산

과거의 북한 인권문제는 그 성격상 남북한간의 완강한 적대자 관계에서 비롯되는 바가 컸다. 그리고 그 해결책 또한 이런 남북한 관계 때문에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기존의 계급정책과 더불어 체제가 극도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제한된 사회적 제 가치들을 핵심계층에 집중시켜 체제의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소외된 일반주민들과 체제 이탈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의 당위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의 취약성과 아직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개선책을 찾기가 힘들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정부가 남북한 관계 개선과 북한을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들은 피하려 함으로써 사실이 은폐되고, 사안의 객관적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발제자는 정부 차원의 접근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한 관계가 ‘불가역적 적대관계’에서 ‘협력적 적대관계’로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북한과 정부 차원의 대화를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한국정부로서는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NGO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화·특성화시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모든 인권단체에서 북한인권 관련 모든 분야를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유기적 협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이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거의 방치되어 온 것은 그 무엇보다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된 자료의 공유화를 통해 연구를 원활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북한 위정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국내·외에서 요구된다.

*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력행사: 인권모니터링, 자료축적,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

남북한 관계상의 부담을 덜고, 북한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4월 16일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가 채택된 것은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료축적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 인권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의 인권의식 결여에 있다는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NGOs 간부 훈련프로그램 개발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할 비정부단체(NGOs) 간부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현재 일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훈련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념, 문화,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일반적 인권개념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점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인권 교육은, 북한학 및 남북한 관계론, 국제기구론, 인권론, 사회복지학 간의 학제간 연구에 기초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 학생·시민 교육

한국사회 내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이 형성되도록 학생과 시민을 위한 교육이 다양한 기회에 주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정보의 부족과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전환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외면하거나 정당화 시키려는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의 인권상

황을 개선시키기는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자주 다루어야 하며, 탈북자들의 수기와 연구서 발간이 장려·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언론매체나 학자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과거 서유럽 좌파 지식인 및 운동가들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인권유린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가장 기형적인 모습은, 진보적임을 자처하는 단체나 언론 및 지식인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정당화 시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정부의 잘못도 크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는 反 북한 선전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이용하다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이를 피하고 숨기는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에서의 인권의식 확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인권의식을 심는 것이고, 일반주민들이 권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의 단편적 시도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한국의 노력만으로 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UNESCO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국제 NGOs의 인도적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협력·활용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무조건 북한을 자극할까봐 전전긍긍해 하지만 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한의 위정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북 현안들을 타결 지을 때 북한에서 인권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상칩들을 개발해야 된다.

[첨부]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E/CN.4/2003/L.31/Rev.1

2003년 4월 15일

인권위원회

제59차 회의

의제 항목 9

200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인권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상시키고 보호하며 다양한 국제적 문서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조약 그리고 여성 차별금지 조약의 가입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조약 그리고 여성차별금지 조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들에 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기적으로 관련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그 보고서들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의 최종평가에 주목하며,

특히 최근의 상황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아 영양실조가 만연되어있는 사실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인도적 상황이 열악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자국민이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정부의 의무임을 재확인하며,

남북한 화해과정의 효과적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진행상황에 주목하며,

인권분야에서 구체적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들을 조성하기를 희망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 이 우려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a)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공개 처형,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많은 강제수용소의 존재, 광범한 강제 노동,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부재.

(b) 사상, 양심, 종교, 의견표현, 평화적 집회·결사, 정보접근 등의 자유에 대한 광범하고 심각한 제약과 국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제한.

(c) 장애자에 관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환영하면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는 사실.

(d)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동 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요청한다.

(a)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인권문서, 특히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근절하는데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과 특히 굶주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이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미 가입해있는 인권문서,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하에서,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권리협약 하에서 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위해 모든 조치들이 취해질 것에 대한 보장.

- (b) 위에 언급된 문제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
- (c) 아동권 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의 이행.
- (d) 특히 인도주의적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동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민들을 규제하고 또 그들의 탈출을 반역으로 취급하여 구금형,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사형에 처하는 일의 중단.
- (e) 인권분야에서 유엔시스템과 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주제별 절차, 특히 식량권 특별보고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단,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단 및 국제인권단체와의 제한 없는 협력.
- (f)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에 대한 분명하고 투명한 해결.
- (g)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기준의 준수.

3. 열악한 인도적 상황들에 대한 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4. 인도주의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곳에 공평하게 배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 특히 유엔기관들이 북한 전역에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게 촉구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원조, 특히 식량원조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도록 할 것과 국제 인도주의 기관 대표들이 그 배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그리고 망명의 기본적 원칙 존중을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 계속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
6. 우리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이 인권 분야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포괄적으로 대화를 가질 것과, 다음 60차 인권위에 조사결과들 및 권고사항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7. 다음 제 60차 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의제 하에 우선적인 문제로 계속 다룰 것을 결정한다.

발제3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하여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하여

정 옥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 문제제기

유엔인권위원회가 4월 16일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가 나라 안팎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대북한 결의안을 표결에 한국 정부는 '불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함으로써 국내 보수 언론과 야당,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쨌든 북한 핵문제에 이어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의 도마위에 오름으로써, 북한은 최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에 이어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지난 5월 중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해 미국 언론들이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북한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유엔 인권위의 결의안 채택은 한국 시민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수적인'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유엔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제기를 주도해오고 있다. 반면에 남북관계, 정보의 불확실성, 문제제기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외면해온 개혁·진보세력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공개/비공개적인 자리에서 개혁·진보세력의 '고민'과 '모색'이 비교적 활발히 모색되고 있지만, 이는 1차

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유엔 인권위 결의안 채택이라는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반성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이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부족을 의미하는 체제적 속성에 의한 인권 문제에서부터 극심한 경제난과 미국과의 적대 관계 지속으로 야기되고 있는 생존권적 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가 주로 북한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에 주된 요인이 있다면, 후자는 북한 경제의 붕괴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해와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 지속,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 등과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한 나라에서는 체제 존속을 위한 내부적 통제가 강화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 선진국이라고 자랑해왔던 미국이,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여러 가지 인권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기실 우리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점은 북한 인권 상황 악화 요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거친 분류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사회는 모든 책임을 북한 정권(내부적 요인)이나 미국(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진실의 정확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이데올로기적 논란만 키울 뿐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보수를 떠나 진정 북한 주민의 관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쉽게 상대방을 재단하는 이념적, 관념적 습성부터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 진·보수 사이에서 상대방의 부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제 분명 북한 인권 문제는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유엔 인권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이상,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처지이다. 더구나 미국의 이라크 무력 점령이후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북한으로 쏠리

고 있고, 북미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최대 피해자가 북한 주민이 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덮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에 가까운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진·보수를 떠나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하기에 앞서, 합의를 시도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인권운동에 대한 경험도 일천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고민해오고, 또 평화운동에 뛰어든 목적을 ‘북한 민중들의 인간적 비용의 최소화’에 두고 있는 만큼, 이 글이 북한 인권문제 해법을 모색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하면서 필자의 인권에 대한 무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2. 유엔 인권위 결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난 4월 16일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한 인권 결의안은 탈북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벌금지, 대북지원상황 점검을 위한 유엔 전문가의 접근허용, 사상·종교·양심·집회·표현 등 기본적 자유의 보장, 유아 영양실조 해결,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정치적 필요에 따른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 처벌과 대우 중지, 공개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가 북한 내 인권 조사활동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고등인권관무관실에 북한 정부와 인권 관련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을 협의해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 결의안이 북한 인권 현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탈북자의 증언 및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조사 등을 종합해볼 때, 유엔 인권위에서 지적한 인권 문제는 비교적 정확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한 지적과 권고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의 '외부적' 요인에 대해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맞물려서 악화되어왔다. 이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에 대한 권고 못지 않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권고할 내용-체제위협 종식, 경제제재 해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 점에 대해 침묵하고 말았다.

또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부시 행정부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사려의 부족을 드러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는 후세인 정권의 테러리스트와의 연계 의혹을, 나중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이 모두가 여유치 않자 독재정권으로부터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다. 북한이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이자 세계 최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고, 핵문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자칫 미국이 이라크 침공과 같은 명분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필자의 주장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 제기의 주체가 정부든, 국제기구든, NGO든 간에, 그 목표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더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빌미로 포용정책을 비난하고 강경책을 옹호하거나, 김정일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북한 제재와 봉쇄, 그리고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환상은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크기만 더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고 인권 상황 악화의 외부적 요인들을 제거해나가면서 북한 정부에게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최선(possible best)'라는 것이다.

3. 평화와 인권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대립을 겪으면서 우리를 괴롭힌 것은 비단 '전쟁의 공포'뿐만이 아니다. 전쟁에 대비한다며 국가안보를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혹은 정권에 의해 반한다고 해석되는 일체의 행위가 부정되면서 겪게된 고통은 역설적으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새로운 한반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그 핵심에는 그 동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누리지 못한 사람의 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한반도의 남쪽은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북쪽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북쪽의 사정은 남북한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불거지게 될 딜레마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민족사의 복원이라는 미해결의 과제를 해결하는 의미로서의 '통일'과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세우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로서의 '통일'의 접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라는 점, 분단과 적대적 대립구조에서 가장 희생되어온 가치가 인권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동안 부정·억압·유보되어온 인간의 권리를 정상화·증진시키는 과정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인권문제의 복잡한 성격에 주목하지 않으면, 협소한 의미의 인권 절대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인권 악화의 요인이 단순히 북한 체제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남북, 북미, 북일 관계 등 탈냉전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고립'에서도 비롯된 것이라면,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함께 바라보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내부의 문제로 환원시키면서 이뤄지는 문제제기와 시정 요구는 그 의도를 떠나 북한 정권에게는 인권을 빌미로 자신의 체제를 압살시키려고 한다는 '인권제국주의'로만 읽히는 이유와도 닿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반발은 반대로 국내외 일부 보수파들이 김정일 체제에는 희망이 없다며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북한 인권 문제를 풀기란 갈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절대시하면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위기 구조를 간과하는 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평화를 저해할 위험성을 안게 된다. 반대로 이른바 ‘선(先) 평화, 후(後) 인권’ 논리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남한의 개발 독재 시대에 ‘선(先) 안보 후(後) 인권’, ‘선(先) 개발 후(後) 인권’ 주장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은 유보될 수 없는 가치라는 보편성의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평화와 인권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경향은 한반도에서 인권과 평화가 ‘상충적인’ 관계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정부와 상당수 개혁·진보세력은 인식이나, 김정일 정권의 타도를 통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은 평화와 인권 사이에 ‘상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가 인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면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평화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우리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거는 평화와 인권 사이의 관계를 상충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두 가지 가치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있지 않을까 한다.

평화와 인권이 선순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으면서 가장 필요한 합의 준거로서 김정일 체제를 교체나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교체론은 첫째,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둘째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체재와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1차적인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되는 반면에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것인지는 극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셋째 한반도에서의 전

쟁 위험성을 극히 높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대북지원에 미온적이었을 때, 김정일 체제는 오히려 강화된 반면에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삶의 터전을 등진 사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날 소위 인권 선진국이라고 불리었던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외국인은 물론이고 자국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인권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내부의 인권 상황의 악화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어떠한 명분이 되었든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이 '무기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그 양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다른 인권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식량권을 담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인권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최근 식량난은 2002년 식량생산량이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최대 식량지원 국가들이 핵, 납치자 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식량지원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인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또 다시 인도적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인권관련 단체를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대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정부와 국제사회에도 정치적 논리와 관계없이 대북 지원을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 마련은 남북, 북미, 북일 관계 등 탈냉전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 대립관계의 완화 및 종식에 있다는 점에 대한 합의이다. 적대적 관계의 지속 및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강화시켜왔고, 최근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준)전시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인권 차원에서 자원분배의 군사 부분으로의 편향, 내부적 통제 및 체제 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 강화, 외부의 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 체제의 불신 증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 및 경제제재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안보와 발전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세력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및 비타협주의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일괄타결에 바탕을 둔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이 순리에 부합할 것이다.

넷째, 북한 인권 문제를 포괄적·일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세우고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가 광범위하게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 타도와 같은 극단주의적 방식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안의 심각성 및 다른 분야의 인권 개선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전재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악화의 외부적 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이뤄질 때 비로소 북한 정권에게 다른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적 호소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한가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적인 발전 모델은 앞서 언급한 군사적 대결 상태를 비롯한 탈군사화를 통해 평화와 인권 문제의 모순적인 관계를 풀어가는 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 남북한의 인권문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체제적인 속성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상호간의 적대적인 대립 속에서 과도한 군사주의의 추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국가안보지상주의, 예산과 인력의 군사화 및 소모적인 군비경쟁 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실 속에서 개개인의 삶을 돌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탈냉전이후 겪게된 국가안보의 위기와 더불어 악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남한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탈냉전이후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냉전의 사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었고, 이것이 민주적 정권의 수립과 인권 문제의 개선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환경을 제공했던 반면에, 북한은 탈냉전이후 오히려 안보와 발전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면서 전반적인 인권 상황의 악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족쇄가 되어왔던 냉전체제의 해체가 남한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반면에, 북한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인권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사회주의니 자본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니’ 하는 상호배제적인 속성과 이로 인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는 지금까지의 체제 및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분단이라는 공통된 환경 속에서 잉태된 군사주의와 교차 승인의 비대칭성의 극복을 통해 인권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어느 ‘일방’의 요구나 비난이 아닌 ‘공동’의 노력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문제의 해결 과정이 남북관계나 평화정착을 저해하지 않는, 오히려 평화와 인권간의 선순환적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한다.